자판기 품목인증제 실시 필요성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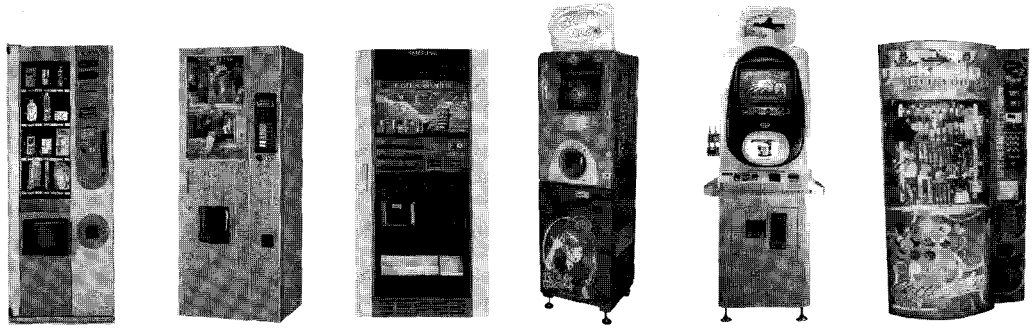

자판기 품목인증제, 왜 필요한 가

자판기 품목인증제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지? 자판기이면 자판기인거지 이를 인증할 필요성이 과연 있을 까? 자판기 품목인증제의 실시 필요성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우선 이러한 의문을 풀고 본격적인 고찰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수순일 거 같다.

자판기를 자판기로 인정하는 품목인증제는 나날이 다양화되는 자판기 동향과 또 여러 성능이 복합 퓨전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최근의 제품화 동향은 과연 이 제품을 자판기로 볼 수 있을 까하는 의문점과 더불어 자판기에 있어 어떤 성능을 메인 성능으로 보아야 할 것 인가 하는 모호성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과거만 해도 자판기로 준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명확했다 한다면, 최근에는 해당품목에 따라 어떠한 적용준거와 해석을 내려야할지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자판기 품목인증제는 그 품목이 확실히 자판기라는 것을 인증해서 자판기로서의 자격요건과 대중성을 확보해 주고자 함이 도입취지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판기 품목인증제의 필요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자판기 분야로의 영역 확대 봇물, 거저 자판기는 있을 수 없다

자판기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설치적인 장소제약을 크게 안받는 다는 점과 남녀노소 그 누구라도 고객으로

삼을 수 있는 대중성에 있다. 즉 이는 장소적인 광의성과 대중성을 공히 갖추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요소는 다른 어떠한 품목들도 누리기 힘든 장점이다. 일반 대중, 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개의 품목은 그 유통 공간이 일반 매장위주로 제한이 되게 마련이다. 물론 이를 탈피할 수 있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의 간접적인 수단이 있기는 하나 어쨌든 자판기만큼의 폭넓은 로케이션 광의성과 대중성을 확보하지는 못한다.

이처럼 자판기는 그 설치에 따라 어떠한 로케이션도 자유스럽게 공략 가능하고, 많은 대중들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는다. 과거만 해도 이같은 장점은 자판기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타 품목으로 분류되던 제품군들마저 속속들이 자판기 영역으로의 진출과 혜택을 넘보고 있는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제품군으로 게임물과 노래방관련 콘텐츠 등을 들 수 있다. 게임물의 경우는 최근 싱글 로케이션이 허용되었다고는 하나 오락실위주의 극히 제한적인 영역을 사업공간으로 삼고 있고, 노래방관련 콘텐츠 역시 노래방, 단란주점 등의 업소이외의 자유스러운 설치를 관련법에서 불허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이들 영역에 있어 자판기가 갖는 장소적인 광의성과 대중성이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없다. 시장상황의 부진을 자판기 분야로의 영역확대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하는 의도가 이들 분야에 있어 깊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게임의 다양한 콘텐츠를 자판기와 접목하려면 현재로서는 그 조건이 극히 까다롭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게임 기능이 부가된 자판기는 현재로서는 메인의 자판기 고유성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부가적인 성능으로서만 가능하다. 여기에 사행성이나 청소년 위해성이 있어도 안되기 때문에 게임의 제공영역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래도 관련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게임을 접목시키고자 골몰하고 결국 상품화되는 제품들은 현재의 허용범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교묘하거나 또 정도가 지나치지 않게 현재의 허용범위를 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아예 그 허용 기준을 넘어서기를 작정을 한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부가성능으로서 게임이 아니라 주 제품 사용 컨셉이 게임기로서 볼 수 있는 제품군들이 교묘히 응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제품군이 학습카드류 자판기라는 미명 하에 자판기로서 제품군거를 주장해온 인형집게기, 기타 게임기 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제품은 자판기로서 일정 성능을 갖추고 제품이 투출되기는 하지만 그 투출물이 투입금액에 상응하지도 않고, 이용자 역시 제품에 관심을 갖는 주요인은 게임에 있지 학습카드 한두 장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이용자는 자판기로서의 제품을 이용하기보다는 게임기로서 제품을 이용한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들 성격의 제품들은 분명 자판기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관련업자들은 엄연한 투출물을 근거로 게임물로 주장을 하고 이에 따른 해석을 받으려 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관련법규의 적용을 모호하게 만들고, 일단 설치 위주의 영업이 이루어져 필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마련이다.

다음은 노래방 관련 콘텐츠 기기의 경우를 살펴보자. 노래방기기가 현행 법령 하에 엄연히 그 설치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상 로케이션을 확대하는 방법은 자판기화를 통해 그 범주를 넓히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활발히 개발이 되는 품목들이 노래방관련 자판기들이다. 이들 품목은 일차적으로는 일정 자판기 부스를 만드는 노래자판기에서부터 시작해 테이프, CD, 뮤직비디오를 녹음 · 녹화해 결과물로 제공하는 형태로 까지 발전해 왔다. 또한 여기에 웹 정보 콘텐츠 기술을 접목해 온라인 상으로 오디션까지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어찌되었건 이들 노래방관련 콘텐츠 기기들은 노래방기기를 응용해 부가 성능을 추가한 까닭에 자판기 품목으로서의 적용과 해석을 명쾌히 할 수 있는 준거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한다는 한 가지 메인성능으로만 보면 노래방기기라는 영역한계로부터 결코 자유스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판기로서의 해석과 적용은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전재조건이다.

위의 두 품목이외에도 기타 웹 정보 콘텐츠 관련 응용기기들 역시 과거와는 볼 수 없었던 자판기분야로의 영역진출 대상군이다. 각종 동영상관련 자판기들과 정보 콘텐츠 제공자판기들이 현 제품화 추세의 주를 이룬다.

과거 스티커자판기가 국내 출시될 때만 해도 국세청에서는 이 품목을 자판기로 보다는 고급사진기로 해석을 해 특소세부과라는 예기치 않았던 시장문제점을 야기했던 전례가 있다. 이 단계에서 몇 단계 기술이 진일보해 다양한 어뮤즈먼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최근의 기종들을 자판기로서 준거하는 일은 그래서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제는 산업자체내에서 보다는 외부적으로 자판기로서의 인식과 판단을 준거하는 일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자판기 품목인증의 충족조건은

지금까지 예시되었던 3가지 품목군을 놓고 보면 품목인증의 필요성은 높아진다. 자판기이면 자판기이지 뭐가 문제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자판기로서의 조건을 면밀 분석해 자판기로서 인정을 받아야 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1차 요건이 된다. 이는 마치 게임기가 게임물로 인증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진배없는 이치이다.

자판기가 아닌 품목이 억지로 자판기 준거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전개가 된다면 필드의 혼란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마련이다. 앞서 언급했듯 자판기의 가장 장점인 장소적인 광의성과 대중성은 결코 마구잡이 식 준거기준으로 용인 될 수 없다.

강조하건데 자판기가 이같은 광의적 유통기기로서의 장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해당제품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있어서 이다. 이같은 자판기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현재로서는 해당 제품의 제공되는 내용물과 서비스가 무엇이냐에 따라 관련법 적용기준을 달리 한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사회적 위해요인이 없어야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청소년 보호문제를 해결했을 경우이다. 이 두 조건은 자판기가 사회적인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할 전재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전재 하에 다음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성능기준이다. 그 해당제품이 자판기로서 과연 기본적인 성능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는 자판기 인증에 있어 필수적이다. 자판기라 하면 우선 외관에 있어서나 내부성능에 있어 그에 걸맞은 성능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품목에 따라 갖추어야할 성능 기준은 각기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부분는 소비자들에게 자판기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무늬만 자판기이고 조악한 제품이 필드에 전개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후문제를 불러일으킨다면 해당제품의 시장성은 당연 보장을 받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자판기 품목인증은 기본적인 품질성능 기준까지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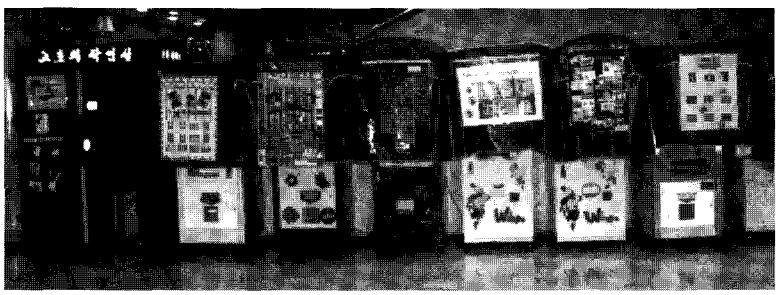

그래서 이상적인 품목인증제의 방향은 자판기 자격요건 인증에 기본 성능기준들을 포함시켜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향은 품목인증만이 아닌 품질인증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이고 유익한 품목인증제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단순히 자판기에 대한 분류와 적용을 업체 자율로만 맡겨 놓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는 자판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춘 제품만이 유통되어야 한다. 전혀 자판기로서의 품목 및 품질기준을 갖추지 못한 제품들이 '히트 앤드 런' 식으로 무분별이 유통되는 것을 막는데도 자판기 품목인증제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판기 품목으로서 만의 인정은 소비자의 신뢰성까지 확보하지 못한다. 떳떳하고 대중적으로 소비자를 상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내외부적인 해당 조건과 의무를 갖추었을 경우이다.

품질인증까지 포함될 수 있는 인증제도가 이상적 방향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자판기 품목인증제의 실시 필요성은 크다. 더욱이 최근같이 무자격 요건의 유사 자판기물들이 범람해 많은 소비자 피해와 자판기에 대한 인식저하를 불러일으키는 현실에 있어 하루라도 빠른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다.

단순히 자판기에 대한 분류와 적용을 업체 자율로만 맡겨 놓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는 자판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춘 제품만이 유통되어야 한다. 전혀 자판기로서의 품목 및 품질기준을 갖추지 못한 제품들이 '히트 앤드 런' 식으로 무분별이 유통되는 것을 막는데도 자판기 품목인증제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높은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야할 길은 멀다. 아직은 품목인증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산업계에 널리 형성되지도 못한 상태이고, 또 그다지 이 제도 도입에 적극성을 보일만한 업체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판기 품목인증이 꼭 필요한 분야의 업체들은 환영할 만도 하겠지만 그외 이 인증 없이도 수월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업체들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번거로운 이 품목 인증제의 도입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품목인증제의 도입은 현재 제품화되었거나 또 제품화될 무수한 자판기 군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준거할 자격요건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품목자체가 멀티화, 퓨전 성능화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있어 동종 제품군이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그 기준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같은 어려운 문제점들은 갖고 있는 현실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한단계 한단계 진일보 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초창기의 도입 방안은 현재 협회의 자판기 자체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품목인증에 충실하며, 기본 성능기준은 꼭 필요한 부분만을 준거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는 성능인증보다는 품목인증 부분에 보다 주안점을 둔 방향으로 자판기로서의 인증이 필요한 제품군이 주 대상이다.

품목인증제의 다음 단계로는 성능기준을 강화해 명실 공히 제도의 근본목적을 살리는 방향이다. 이는 품목인증뿐만이 아닌 품질인증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자판기 인증제도에 있어선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다.

KOVA마크와 병행이냐, 단독이냐

협회에서는 자판기 품목인증제의 도입에 있어 현재 온음료 자판기와 슬러쉬 품목에 걸쳐 시행중인 KOVA 마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별도의 자판기 인증마크가 아닌 KOVA마크를 응용, 활용해 명실 공히 이 마크를 자판기 분야의 전체적인 인증마크로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게 그 취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은 한 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다. 과연 전체적으로 KOVA마크를 도입하게 될 경우 소비자들의 마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작용한다. 물론 이는 제품 성능기준에서 평가를 해야할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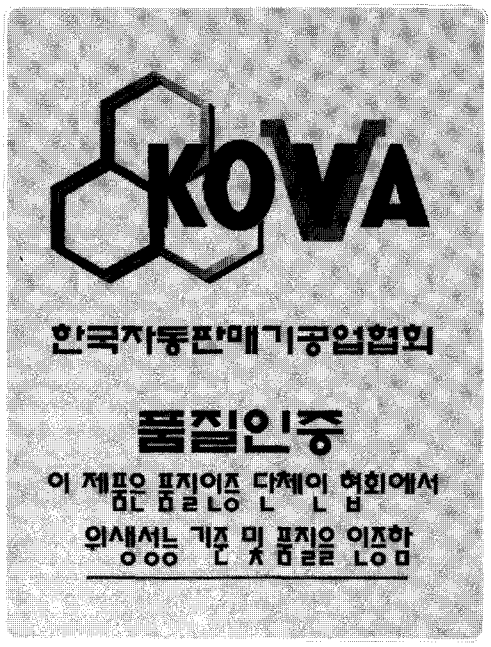

분이기는 하나 여러 품목 분야에 있어 과연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할만한 품질성능기준을 갖추느냐, 또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신뢰성을 보장하느냐 하는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마크에 있어 생명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KOVA마크가 자격요건을 갖춘 극히 제한적인 품목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하나, 그게 아니면 모든 품목에 걸쳐 문호 확장을 하느냐 여부가 우선 산업계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 신중이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KOVA마크의 전체적인 범용마크로서의 확대가 아직은 무리라는 판단이 주를 이룬다면 기존 마크와는 별도의 품목인증마크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이를 응용 활용한 방안으로서의 도입이 추진 될 것이다. 별도의 품목인증마크는 KOVA마크와는 무관하게 다른 디자인과 마크 명칭으로서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이고, KOVA마크를 응용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마크명칭은 사용하되 품목인증에 주안점을 둔 마크 디자인과 문구를 집어넣어 기존 KOVA마크와는 차별화하는 방법이다.

산업계의 제도실시에 대한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급선무과제

위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자판기 품목인증을 실시하려는 산업계의 의지만 충만하다면 소기의 도입효과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품목인증제가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 궁극적인 지향점과 목표는 하나라는 데 산업계는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제도의 효용과 가치를 살리는 일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될 일이고, 중요한 점은 과연 이 제도의 실시 필요성에 대해 산업계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산업계에서 원치도 않은 제도를 무리하게 실시하다가는 애초 도입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파생시킬 수 있다. 산업계는 하루 빨리 품목인증제 실시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도입기관인 협회에 추진력을 실어줄 일이다. 비록 귀찮고 시간과 비용도 소요되는 일일지는 몰라도 시장을 보다 건전하고 장기화시키게 하는, 그래서 개별업체의 사업성도 동반해 커지게 하는게 바로 품목인증제라는 인식이 하루 빨리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협회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업계에 제시하고, 업계는 이에 걸맞은 제품수준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아직은 요원한 듯 보이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중의 하나인 품목인증제가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하루 빨리 가시화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